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○(國)○(內)○(事)○(件)○

商標拒絕定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2. 7. 27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정 태 균

關與法官： " 윤 일 영, 김 덕 주, 오 성 환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조오지후 이이 시이 그램 엔드 선즈 인코포레이티드(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파이크 아바뉴 375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特許廳長
3. 原審決：特許廳 1982. 1. 29주, 抗告審判絶 第273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上告理由를 判近한다.

原審이 確定된 事實에 依하면 本件 出願商標는 "CROWN RUSSE"라고 英文字로 表記하여 된 文字商標로써 第6類인 위스키, 브랜드, 맥주 등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타원형과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"CROWN"이라고 表記한 商標이며 그 指定商品은 맥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위 두 商標를 外觀上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本件出願商標는 "CROW RUSSE"라고 호칭될 것이며 그 호칭은 登錄商標의 要部인 CROWN을 直感케 하거나 연상케 될 것이고 또 本件 出願商標는 登錄商標의 文字인 CROWN에 KUSSE라는 文字를 結合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 감각으로 보아 그 結合으로 因하여 CROWN이 가지는 觀念과는 다른 새로운 觀念이 形成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商標를 類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두 商標를 類似하다고 判示한 原審決은 正當하고 原審決이 論旨가 공격하는 것처럼 外觀에 對한 判斷을 하지 아니하고 商標의 칭호를 여러개의 構成部分으로 나뉘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判斷하였다

하더라도 本件 두 商標가 거기에 使用된 文字 등全體를 基準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匹차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는 結論에는 영향이 없으며 論旨가 말하는 判決들은 모두 本件에 직접한 것이 못되고 原審決에 所論과 같이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의 법리오향나 심리미진과 裁證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.

參 考

抗告審判

1980年 抗告審判(절) 第273

號抗告審判請求人：조오지후 이이 시이그램 엔드 선즈 인코포레이티드
被抗告審判請求人：特許廳長

1978年 商標登錄出願 第6611號 拒絕查定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 文：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